##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지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55

발의연월일: 2022. 9. 14.

발 의 자:지성호·김석기·김승수

김용판 · 김희곤 · 노용호

박대수 · 박정하 · 양금희

정찬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.

이에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,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가. "저공해건설기계"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, 원동기 배출허용 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원동기를 사용한 건설 기계로 정의하고,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을 포함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하는 저공해건설기계 정의 신설 등 정의 및 기준을

보완함(안 제2조 및 제48조).

- 나. 의무운행기간 설정 등 저공해건설기계 보급과 건설기계 저공해 조 치 등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(안 제47조 및 58 조).
- 다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노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기계 전환 또는 개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,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, 저공해건설기계로의 개조,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의 설치,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구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58조및 94조).
- 라. 한국자동차환경협회(이하 "협회")의 설립 목적,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합(안 제78조, 제79조 및 제80조).

##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3호의2가목 중 "건설기계에"를 "건설기계(이하 "건설기계"라한다)에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7호 중 "자동차에서"를 "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"로, "자동차에 부착"을 "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8호중 "자동차"를 "자동차 또는 건설기계"로 한다.

16의2. "저공해건설기계"란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6조제1항 단서 중 "저공해자동차를"을 "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 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"로, "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"을 "저공 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"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동차"를 "자동차 및 건설기계"로 하고.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저공해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

제48조제1항 본문 중 "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"을 "저공해자동차

등의배출허용기준을"로 한다.

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건설기계(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 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를 "건설기계"로 하고. 같은 항 제1호 중 "저공해자동차"를 "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 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저공해자동차"를 "저 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"로 하고.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"저공 해자동차"를 "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"로 하며, 같은 항 제 1호의2 중 "저공해자동차"를 "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"로 하고.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저공해자동차"를 "저공해자 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"로 하며. 같은 호 가목 중 "자동차"를 "자 동차 또는 건설기계"로 하고. 같은 호 나목 중 "자동차(이하 "전기자 동차""를 "자동차 또는 건설기계(이하 "전기자동차등"이"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"자동차(이하 "수소전기자동차"라 한다)"를 "자동차(이하 "수소전기자동차"라 한다) 또는 건설기계"로 하고. 같은 호 라목 중 "저공해자동차"를 "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"자동차"을 각각 "자동차 또는 건설기계"로 하고. 같은 조 제4항 중 "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 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"를 "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" 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중 "저공해자동차 또는"을 "저공해자동차, 저 공해건설기계 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3항 중 "자동차"를 "자동차 및 건설기계"로 하며, 같은 조 제16항 중 "자동차에"를 "자동차 및 저 공해건설기계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18항 중 "저공해자동차"를 "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"로, "전기자동차"를 각각 "전기자동차등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19항 중 "전기자동차"를 "전기자동차등의"로한다.

제78조제1항 중 "자동차 배출가스"를 "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"로 한다.

제79조제5호 중 "종합검사대행자"를 "종합검사대행자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"자동차조기폐차"를 "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"로 한다.

제80조제1호 중 "운행차"를 "자동차와 건설기계"로, "배출가스저감장 치"를 "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자동차"를 "자동차와 건설기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운행차"를 "자동차와 건설기계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자동차"를 "자동차와 건설기계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자동차"를 "자동차와 건설기계의"로 하다.

제94조제2항제4호 중 "저공해자동차"를 "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3의2. "원동기"란 다음 각 목	13의2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	
을 말한다.	
가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	가
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	
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	
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	
로 정하는 <u>건설기계에</u> 사	<u>건설기계(이하</u>
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	"건설기계"라 한다)에
장치	
나.•다. (생 략)	나.・다. (현행과 같음)
14. ~ 16. (생 략)	14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6의2. "저공해건설기계"란 건
	설기계 중 대기환경오염물질
	의 배출이 없거나 오염물질을
	적게 배출하는 것으로서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
	<u>다.</u>
17. "배출가스저감장치"란 <u>자동</u>	17 <u>자</u>
<u>차에서</u> 배출되는 대기오염물	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

질을 줄이기 위하여 <u>자동차</u> 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.

18. "저공해엔진"이란 <u>자동차</u>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(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)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.

19. ~ 23. (생략)

제46조(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저공 등) ① 자동차(원동기 및 저공 해자동차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,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, 제50조의2, 제50조의3,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, 제82조제1항제6호, 제89조제6호·제7호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)를 제작(수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려는 자(이하 "자동차제작자"라한다)는 그 자동차(이하 "제작차"라한다)에서 나오는 오염물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

또는 건설기계에 부착
18 <u>자동차</u>
<u>또는 건설기계</u>
19. ~ 23. (현행과 같음)
제46조(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
등) ①

염물질만 해당한다. 이하 "배출 가스"라 한다)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(이하 "제작차 배출허용기준"이라 한다)에 맞 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저공해자동차를</u> 제작하려는 자 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별도의 허용기준(이하 "<u>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</u>"이 라 한다)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47조(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)

- ① 국가는 <u>자동차</u>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1. (생략)

<신 설>

2. · 3. (생략)

② (생 략)

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
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
<u> </u>
" <u>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</u> ~"
<u> 군"</u>
,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7조(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)
① <u>자동차 및 건설기계</u>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저공해건설기계 및 그 건
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
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
하는 시설
2.·3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제작차에 대한 인증) ① 제48조(제작차에 대한 인증) ① -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 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 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 허용기준(저공해자동차배출허 용기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 증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환경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

#### ② ~ ④ (생 략)

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
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(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

세40소(세식사에 대한 한당) ① -
고고쉐기도카드 이메츠취
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
용기준을
·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연맹과 실금)
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
①
고 서 기 궤
건설기계
·

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 유자에게 그 시·도 또는 시· 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 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 다.

- 1. <u>저공해자동차</u>로의 전환 또는 개조
- 2. 3. (생략)
- ② (생략)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<u>저</u> <u>공해자동차</u>의 보급, 배출가스저 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 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- 1. <u>저공해자동차</u>를 구입하는 자.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 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 의 구매 여부,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

1. <u>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</u>
<u>설기계</u>
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*</u>
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-
·
1. <u>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</u>
1. <u>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</u>

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	보
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	할
수 있다.	

- 1의2. <u>저공해자동차</u>로 개조하는 1 자
- 2. <u>저공해자동차</u>에 연료를 공급 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
  - 가.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 하는 <u>자동차</u>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
  - 나.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(이하 "전기자동차" 라 한다)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
  - 다.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<u>자동차(이하 "수소전기자동차"라 한다)에</u>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(이하 "수소연료공급시설"이라 한다)
  - 라.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 부장관이 정하는 <u>저공해자</u>

[의2. <u>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</u>
<u>해건설기계</u>
2.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
설기계
가
자동차 또는 건설기계
나
자동차 또는 건설기계(이하
<u> "전기자동차등"이</u>
다
<u>자동차(이하 "수소</u>
전기자동차"라 한다) 또는
<u> 건설기계에</u>
라
저공해자

## <u>동차</u> 연료공급시설 3.·4. (생 략)

- 5.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6.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 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<u>자동</u>차를 구입하는 자
-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·제1호의2·제3호·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(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소유자"라 한다)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- ①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 계(이하 이 조에서 "저공해자

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
3.・4. (현행과 같음)
5
자동차 또는 건설기계
6
자동
<u> 차 또는 건설기계</u>
<u> </u>
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
<u> </u>
⑤ ~ ⑩ (현행과 같음)
① 저공해자동차, 저공해건설기
계 또는

동차등"이라 한다)의 소유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 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 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 을 신청할 수 있다.

#### ① (생략)

①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제1 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<u>자동차</u>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## ①·⑤ (생 략)

(b)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<u>자</u> 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 ① (생략)

⑧ 환경부장관은 <u>저공해자동차</u>중 <u>전기자동차</u>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

① (현행과 같음)
(3)
<u>자동차 및 건설기계</u>
<u>.</u>
①·⑤ (현행과 같음)
16
<u>자</u>
<u>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에</u>
<u>.</u>
(lp (현행과 같음)
(B) <u>저공해자동차 및</u>
<u> </u>
<u>등의</u>
<u>6 –1</u>

따른 <u>전기자동차</u>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①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 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8조(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) ① <u>자동차 배출가스</u>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있다.

## ② ~ ④ (생 략)

- 제79조(회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 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  - 1. ~ 4. (생 략)
  - 5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의2 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

	<u>전기자동차등의</u>
제78조(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 립 등) ① <u>자동차와 건설기계</u> 의 배출가스 	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제79조(회원)           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5            종합검사대행자         및	제78조(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 립 등) ① <u>자동차와 건설기계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제79조(회원)           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5            종합검사대행자         및	
1. ~ 4. (현행과 같음) 5 <u>종합검사대행자 및</u>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1. ~ 4. (현행과 같음) 5 <u>종합검사대행자 및</u>	
	, _ , .
'건일기계판리법」 세14소에	
따른 검사대행자	

- 6. (생략)
- 7. <u>자동차 조기폐차</u> 관련 사업 자

제80조(업무)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
- 1. <u>운행차</u>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
- 2. <u>자동차</u>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- 3. <u>운행차</u> 배출가스 검사와 정 비기술의 연구·개발사업
- 4. (생략)
- 5. 그 밖에 <u>자동차</u>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4조(과태료) ① (생 략)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~ 3. (생략)
  - 4. 제58조제1항에 따른 <u>저공해</u> <u>자동차</u>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,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 착·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, 저공 해엔진(혼소엔진을 포함한다)

6. (현행과 같음)
7자동차 또는 건설기계
조기 폐차
제80조(업무)
1. 자동차와 건설기계
배출가스저감장
치와 저공해엔진
<u> </u>
2. <u>작동작각 신설기계</u>
o 키도키이 되셔키네
3. <u>자동차와 건설기계</u>
4 /키레기 기 ()
4. (현행과 같음)
5 <u>자동차와 건설기계</u>
<u>o</u>
제9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3. (현행과 같음)
4저공해
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-

 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

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 5. (생 략)

 ③ ~ ⑥ (생 략)

\_\_\_\_\_

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